

2013. 8. 6.>

- ② 시 ·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 8. 6.>

제5절 물류 관련 단체의 육성

제55조(물류관련협회 등) ① 물류기업, 화주기업, 그 밖에 물류활동과 관련된 자는 물류체계를 효율화하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(이하 "물류관련협회"라 한다)를 설립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3. 8. 6.>

②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100개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기업 200개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소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③ 물류관련협회는 제2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④ 물류관련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⑤ 물류관련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관련협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류관련협회를 행정적 ·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
⑦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6조(민 · 관 합동 물류지원센터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· 산업통상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관련협회 및 물류관련 전문기관 · 단체는 공동으로 물류체계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물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지원센터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25. 10. 1.>

② 물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물류기업의 국내투자유치 지원

2. 물류산업의 육성 · 발전을 위한 조사 · 연구

3. 그 밖에 물류 공동화 및 정보화 지원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
③ 물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·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25. 10. 1.>

제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

제1절 물류 관련 연구개발

제57조(물류 관련 신기술 · 기법의 연구개발 및 보급 촉진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첨단화물운송체계 · 클라우드컴퓨팅 · 무선주파수인식 및 정온(定溫)물류 등 물류 관련 신기술 · 기법(이하 "물류신기술"이라 한다)의 연구개발 및 이를 통한 첨단 물류시설 · 장비 · 운송수단(이하 "첨단물류시설등"이라 한다)의 보급 ·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8. 6. 12., 2018. 8. 14., 2023. 4. 18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·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물류기업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, 2013. 8. 6., 2018. 6. 12.>

1. 물류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

2. 기존 물류시설 · 장비 · 운송수단을 첨단물류시설등으로 전환하거나 첨단물류시설등을 새롭게 도입하는 경우